

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 13558호

시행일자 2022. 2. 1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3-4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771(2022.2.9.)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사항등을 반영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4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진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 (76p, 78p)	[당초]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운영중단 10일 → (2차) 20일 → (3차) 3개월 → (4차) 폐쇄명령 [변경] - (과태료,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경고 → (2차)운영중단 10일 → (3차) 20일 → (4차) 3개월 → (5차) 폐쇄명령
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6p)	보건소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 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7p,59p)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 필수정보(검사일, 음성결과,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등) 포함 필요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67p)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제3-4판) 1부. 끝.

#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학회의사협의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